[2023-2] ○○○ 이의신청 요약 ['23. 1. 12. 접수]

사실 관계

○ xxxx.xx.xx. 신청인,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적용받아 쟁점주택 취득

○ xxxx.xx.xx. 처분청, 신청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은 사실 확인
→ 신청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추징*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고지

*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

○ xxxx.xx.xx. 신청인, 이의신청 제기

쟁점 사항

○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취득 후,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
신청인 주장

○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집을 팔지 않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종합판단 : 기 각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○ 「지방세법」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신고·납부 세목으로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**과세관청의 신고·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수행위에 불과**(조심2020지0865 2021.5.20., 조심 2020지1857 2021.5.10.)하므로

○ 신청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.